의안번호	제 432 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6년 8월 19일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432호

제출연월일: 2016년 8월 19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○ 「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위・수탁 협약이 종료(2016. 12. 31.)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 :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

나. 추진 계획

○ 수탁기간 : 2017.1.1. ~ 2019.12.31.(3년간)

○ 수탁기관 : 청소년단체·법인, 청소년관련학과 개설 대학 및 학교법인 ※ 現 수탁기관 : 학교법인 주성학원('14.1.1~'16.12.31)

○ 수탁방법 : 공모 선정 또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협약 ※ 재협약 : 1회에 한하여 공모 생략, 연장 가능(자연학습원 조례)

- 위탁주요사업
 -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산관리
 -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부과·징수
 - 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·훈련
 -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제반사무 ※ 위탁 기본 계획 별첨

○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6. 9월

자연학습원 운영 수탁기관 선정계획 : '16. 10월

-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추진(공모의 경우) : '16. 11월

-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6. 12월

3. 참고사항

○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위탁 추진계획(안)

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위탁 추진계획(안)

청소년환경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위·수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계획 검토보고임

⇒ 現, 수탁기관: 학교법인 주성학원('16. 12. 31.까지)

1 관련근거

- O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O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
 - 위탁대상 사무 및 도의회 동의 규정
- O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 - 기 민간위탁사무도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도의회 동의 조치

2 現, 위·수탁 현황

- O 수탁기관 : 학교법인 주성학원(대표 : 박재택)
- O 수탁기간: 2014. 1. 1 ~ 2016. 12 .31(3년)
- O 위 치 :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314-2(송면리)
- O 규 모: 연면적 5,208 m²
 - 사무실·숙소 등 (지하2층, 지상3층)
 - 야외무대, 조류관람장, 외부 화장실 등
 - 체험시설 : 짚라인, 안전체험장, 암벽등반, 소화기체험, 구름다리 등

O 위탁사무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산 관리
-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부과·징수
- 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·훈련
-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제반사무

3 위탁 추진일정

①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6. 9월

② 자연학습원 운영 수탁기관 선정방침 수립 : 16. 10월

- O 위탁방법, 위탁기간,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
 - 현 수탁기관이 재운영 의사가 있는 경우 : 재협약 검토 ※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(자연학습원 조례 제12조 제2항)
 - 현 수탁기관이 재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: 공개모집

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: '16. 11월

○ 구성인원 : 6~9인 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
④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6. 12월

4 행정사항

O 위·수탁 협약 후 홈페이지 등 공고

[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]

- 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·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단체 등(이하 "수탁관리자" 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경우 **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**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.
 -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, 개인에 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⑤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과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】

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-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- **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**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-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5. 3. 27>
- 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 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수 없다.<개정 2015. 3. 27>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3. 27>
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